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9 - 745호

**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2재정비촉진구역
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**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19호(2014. 3 .27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2재정비촉진구역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일몰기한이 도래되어 정비구역의 해제 및 연장 결정을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5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- 공람기간 : 2019. 7. 5. ~ 2019. 7. 25.(20일)
-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☎ 2148-2694
- 의견제출 방법 : 공람기간 내 방문, 우편 또는 팩스 접수
 - 방문접수 : 종로구청 도시개발과
 - 우편접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43(수송동) 종로구청 도시개발과
 - 팩스접수 : 02-2148-5828
- 세운2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도래
 - 촉진구역명 : 세운2재정비촉진구역(2-1구역~2-35구역)
 - 촉진구역 위치 및 면적
 - 위 치 : 종로구 장사동 67번지 일대

- 면 적 : 38,962.6㎡(35개구역)
- 사업의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일몰기한 : 정비구역지정 · 고시된 날(2014. 3. 27.)부터 5년이 되는 날
- 의견 청취 내용
 -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또는 일몰기한 연장(2년)에 대한 의견 등.

구역명				
대상 물건지	건물			
	토지			
의견 제출인	성명		주민등록 번호	— * * * * *
	주소		전화번호	

- ① 전체구역(2-1구역 ~ 2-35구역) 해제
- ② 소유 토지(건물)이 속한 ()구역 해제 예시) 2-1구역, 2-15구역 해제
- ③ 소유 토지(건물)이 속한 ()구역 연장 예시) 2-1구역, 2-15구역 연장
- ④ 전체구역(2-1구역 ~ 2-35구역) 연장
- ⑤ 기타()

○ 세운2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 선택 사유, 구체적인 도시관리 방향 등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빈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